

## 청 원 요 지 서

접수번호	31	접수연월일	2020. 10. 23
청원인	주소	서울시 광진구 구의로	
	성명	윤재상 외 78명	
소개의원 (소속위원회)	김호평(도시계획관리), 전병주(교육) 오현정(환경수자원), 김재형(행정자치)		
건명	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 기부채납 구청 환원에 관한 청원		
소관위원회	도시계획관리		
<p>○ 서울시는 광진구 구의 자양 재정비촉진구역 내 자양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(KT 부지, 약 23,600평)을 추진하면서, KT로부터 기부채납 받기로 한 광진구 신청사 예정부지와 청사건물 일부를 광진구에서 다시 매입하라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음.</p> <p>서울시에서는 사업초기 ‘문화시설’로 계획되어 ‘광진구 신청사 건립’으로 계획이 변경되었어도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, 이는 공공시설은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‘무상으로 귀속’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(국토계획법 제65조)에도 맞지 않음.</p> <p>광진구 신청사(공공청사)는 ‘기반시설’로써 사용용도, 운영 및 관리주체가 광진구청인 것이 명백한 바, 이에, 광진구 신청사 예정 부지를 시설물의 직접적·독자적 관리청인 광진구청으로 환원하여 줄 것을 청원함.</p>			